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829호 2021. 11. 3(수)



선	기관의	장
결		

고 시

제2021-153호 도로명주소 고시 4
ਰ ਹ
제2021-1527호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2021-1529호「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25
제2021-1531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 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33
제2021-1541호「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6
제2021-15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46
제2021-1546호 완전출국자 등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47
제2021-1547호「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9

제2021-152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 3

제2021-1548호「거창	군 행정기구와 정원 3	조례 시행규칙」		
일부기	배정규칙안 입법예고·			59
제2021-1549호「거창	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8
제2021-15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 74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과수재배)

2. 사업내역

A1	~1	사	·업시행면	년적(m²)	N Alan	المال المال	사업시행	자
위	치	구분	지 적	개간 숭인면적	사업비	사업 예정기간	주 소	성 명
거창군	ALOE.	당초	12,893 m²	4,848 m²	9,200천원	2020. 2. 8. ~ 2021. 11. 3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자 영 *
거창읍 산95 · 장팔리	변경	12,893 m²	4,848 m²	13,000천원	2020. 2. 8. ~ 2022. 11. 30.	장팔3길 22	장 영 *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40-3542】

2021년 11월 3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고시 제2021 - 15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3.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3길 65-55 등 2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2길 46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밤티재로 131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O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종전주소		고 시 일		C 크레보셨지요	이동사유	비고
번호	하 인구도	도로명주소	도로명	도로명주소	도로명부여사유	VIΘNIT	1174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67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3길 65-55	20211103	20091228	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347-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계동길 226-12	20211103	20090401	마을 앞의 큰 돌 그늘이 마을에 이르러 음석이라 부르다가 뜻이 좋지 않다하여 양평으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2길 4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2길 46	20211103	20090401	거열산성 밑 계전 골짜기 동쪽에 자리 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변경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밤티재로 1315		20211103	20090401	행정구역명 대산리가 반영된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폐지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지역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급식의 먹거리 공공성 확보 및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님의 책무 등(안 제1조 ~ 안 제4조)
- 나. 공공급식 지원계획·내용·대상 등(안 제5조 ~ 안 제8조)
- 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9조 ~ 안 제10조)
- 라.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안 11조)
- 마.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2조 ~ 안 제16조)

- 시행규칙 주요내용
- 가. 조례 시행규칙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공공급식 지원계획·대상·절차 세부적 규정(안 제3조 ~ 안 제6조)
- 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운영위원회 기능 등(안 제7조 ~ 안 제9조)
- 라.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안 제10조)
- 마. 실무협의회(안 제11조)
- 4. 제정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 붙임
- 5. 입법예고 기간 : 2021. 10. 28. ~ 2021. 11. 17.(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복농촌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 전화번호 : 055)940-8292
 - FAX: 055)940-8229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 2.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 3.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	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번호 2021-

제출일자	2021. 10
제 출 자	행복농촌과장

1. 제안 이유

지역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급식의 먹거리 공공성 확보 및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안 제1조 ~ 안 제4조)
- 나. 공공급식 지원계획 및 내용, 대상 등을 정함(안 제5조~ 안 제8조)
- 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 라.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안 제11조)
- 마.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정함(안 제12조 ~ 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 2)「학교급식법」제5조, 제8조, 제9조
 - 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 제15조
-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3,796백만원(도 1,049, 군 2,747)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0. 28. ~ 11. 17.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평가의뢰 및 반영여부 기술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 거창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급식"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기관·단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는 단체 급식과 학교급식을 말한다.
- 2.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 3. "지역농산물"이란 군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 4.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 어 이력추적이 가능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 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수립해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 2.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 3.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 4.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 5. 지역농산물의 홍보 및 교육
 - 6.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 · 연구
 - 7.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 3. 군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거창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공공급식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학교급식 대상(다만, 같은 조 제1호 단서

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급식 대상

제8조(급식시설 지원 등) 군수는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그 밖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공급식 지원
-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 3.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 · 관리
- 4. 지역농산물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 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거창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거창군 공공급식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12조(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공급식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결정
 - 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관련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거창군의회 의원 1명
 - 2. 거창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 1명
 - 3. 학부모 대표 2명
 - 4. 교원단체 1명
 - 5. 농업인단체 1명
 - 6. 생산자단체 1명
 - 7. 학교 영양(교)사 및 조리사 단체 2명
 - 8. 시민단체 1명
 - 9.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1명
 -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 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 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1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 등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규칙안

제출일자	2021. 10
제 출 자	행복농촌과장

1. 제안 이유

공공급식의 먹거리 공공성 확보 및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 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규칙을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시행규칙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공공급식 지원계획 및 대상,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3조~안 제6조)
- 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정함(안 제7조~ 안 제9조)
- 라. 식재료 공급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10조)
- 마.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지방자치법」제9조, 제23조
 - 2)「학교급식법」제5조, 제8조, 제9조
 -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 제15조
-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3,796백만원(도 1,049, 군 2,747) 확보예정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 10. 28. ~ 11. 17.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평가의뢰 및 반영여부 기술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배송자"란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2. "공급자"란 우수 식재료를 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 3.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우수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 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 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 아.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거창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
- 제3조(공공급식 지원계획) 조례 제5조 제1항 중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지원 방안
- 3.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 4.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 6.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4조(공공급식 지원대상) 조례 제6조 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급 식 지원대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5.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연구기관
-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8.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9.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10.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 11. 그 밖에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 제5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을 통지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 급식 지원신청서와 공공급식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되,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공공급식 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 3. 지원대상자 공공급식 인원
- 4. 공공급식 경비 및 우수 식재료 총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 대상은 그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지원센터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 및 유치원 등이 급식에 안전하고 신 선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는 조례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군의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 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 ④ 운영위원회를 보조할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⑤ 지원센터는 운영위원회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다음 정기회의 시 조 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 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 수탁기관 관리자
- 2.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보건급식담당주사
- 3.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 4.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 5. 군내 학부모 단체 추천인
- 6. 군내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인
- 7. 군내 시민단체 추천인
- 8.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사람

- ④ 간사는 급식업무 담당자로 하고 발언권을 갖는다.
- ⑤ 회의는 매월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운영위원장과 운영부위원장, 간사가 필요시에는 수시로 열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지원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월별 공공급식 공급가격 결정
- 3. 월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항 점검과 불합리한 사유 발견 시 시정요구
- 4. 운영인력, 집행, 경비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센터에 등록해야 지원대상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가 있다.
- ② 공급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배송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별도의 집하장으로 물품을 배송하여야 한다. 다만, 배송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공급자는 지원센터가 실사를 요구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제7조 제4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공공급식 관련 담당주사가 되며, 그 구성은 센터 장이 정한다.
-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운영위원회 상정의안 사전 검토 조정
- 2.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처리
- 3.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추진 점검
- 4. 식재료 공급단가 사전조사 및 협의
- 5. 식재료의 품질, 규격 등의 협의
- 6.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전반에 관한 협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비용발생 요인 : 학교급식비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시스템 유지 비용 등
 - ▶ 관련 조문: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 제9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 공공급식 공급학교 및 학생수 : 52개소

구분	개소수	학생수	비고
계	51개소	7,121	
유치원(공립, 사립, 대안)	17개소(병설유 13개 포함)	521	
학교(초,중,고, 특수)	34개소	6,600	

※ 학생수는 매년 100명 정도 감소하지만, 식재료 단가 인상에 따른 급식비 단가가 상승하므로 매년 총 급식비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입계
총 비용(a-b)		2,747	2,747	2,747	2,747	2,747	13,735
	도비	1,049	1,049	1,049	1,049	1,049	5,245
세출	군비	2,747	2,747	2,747	2,747	2,747	13,735
	소계(a)	3,796	3,796	3,796	3,796	3,796	18,980
세입	노비	1,049	1,049	1,049	1,049	1,049	5,245
	소계(b)	1,049	1,049	1,049	1,049	1,049	5,245

3. 관련 의견

▶ 공공급식의 질 향상 및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비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시스템 유지 비용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 급식비 : 2,675 백만원
 - 학교급식비 1,526, 유치원급식비 249, 우수농산물 지원 900
-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시스템 유지 비용 등 : 72 백만원
 - 시설보수 30, 시스템 및 시설장비 유지 27, 교육 및 위원회 15

작성자: 행복농촌과장 성 수 용

참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 · 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23조(규칙)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u>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 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②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 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 10. 17., 2010. 7. 23., 2021. 3. 23.>
-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

- 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 생
-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 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 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 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거창군 공고 제 2021-1529 호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2. 제정이유 :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의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구성을 정함(안 제3조)
 - 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정함(안 제4조ㆍ제5조)
 - 다. 회의를 정함(안 제7조)
 - 라.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함(안 제8조)
 - 마. 통합사례회의 운영을 정함(안 제9조)
- 4. 예고기간 : 2021. 10. 29.(금) ~ 11. 18.(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11. 18.(목)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 1) 주소 : (우501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청소년수련관(인구교육과)
 - 2) 전화 : 055-940-8703, 팩스 : 055-940-8709, 이메일 : kaomaru@korea.kr
- 6.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 ☎ 055-940-870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 2.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제정안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규	칙	명	: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	---	---	---	------	------------	----	-----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2]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장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 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 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 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 방센터의 장
- 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 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 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 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군수가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 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계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10조(회의록) 군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석발언한 관계자 등에게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u>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u>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거창군 공고 제2021 - 1531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 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 고시 제2008-43(2008.09.25.)호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거창사과 푸드코트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03.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설비시설)

○ 명 칭 : 거창사과 푸드코트 조성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가. 결정면적 : 94,523.9 m²

나. 사업개요

			사업규	최 초 결정일	비고		
종 류	위 치	경경매경	금회시행				
		결정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_ • _	
유통업무 설비시설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	94,523.9	37,263	613.90	998.27	거고 제2008-43호 (2008.09.25.)	

다. 건축 개요

구분	용도	연면적	비고
주1동 (기존)	창고시설	8,218.98m²	
주2동 (기존)	창고시설	2,874.30 m²	
주3동 (기존)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729.69m²	
주4동 (기존)	창고시설	900.00m²	
주5동 (기존)	창고시설	225.00m²	
주6동 (기존)	소매점	118.50m²	
주7동 (기존)	창고시설	1,510.00m²	
주8동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535.13m²	
100 (중축)	2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463.14m²	
	소계 :	998.27 m²	
	합계(기존)	14,576.47 m²	
	합계(변경)	15,574.74m²	+998.27 m²

4. 사업 시행자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9. 의견제출 및 열람: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O 성 명:

O 연락처 :

O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²)	면적(m²)	소유자
1	거창읍 대평리	1347	창	37,263	37,263	거창군
	합기	1		37,263	37,263	

거창군 공고 제2021-1541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자활지원사업 및 노인 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설치목적을 달성한 양성평등기금은 폐지 하여 일반회계로 편성·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1) (현행) 2021. 12. 31. ⇒ (변경) 2026. 12. 31.
 - 2)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제2조)
 - 1) (현행)「지방자치법」제142조 ⇒ (변경)「지방자치법」제159조
 - 2)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 ⇒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 다. 양성평등기금 폐지(안 제1조·제2조·제4조·제6조·제8조·제9조)

- 3. 개정 조례안: 붙임
-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복지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 다. 우편번호: 51032, 전화/팩스: 055-940-3092/940-3089 이메일: tjsl0130@korea.kr
 -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5. 입법예고문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	---	---	---	------	--------	----	---	----	------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제출연월일	2021. 11
제 출 자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노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자활지원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설치목적을 달성한 양성평등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성·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 1) (현행) 2021. 12. 31. ⇒ (변경) 2026. 12. 31.
 - 2) 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제2조)
 - 1) (현행)「지방자치법」제142조 ⇒ (변경)「지방자치법」제159조
 - 2)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 (변경)「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제18조의7
- 다. 양성평등기금 폐지(안 제1조·제2조·제4조·제6조·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2) 「지방자치법」제15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법리 검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1.11.3.~11.22.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

제3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을 "노인복지기금"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거창군"을 "군"으로 각각 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노인복지, 양성평등"을 "노인복지"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적용례)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 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조문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 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 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1. 노인복지기금
- 2.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삭 제> 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 에 따른 자활기금

따른 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 으로 조성한다. 워으로 조성한다.

1.~6. (생략)

제6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 ① 제8조 <삭 제>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이 하 "양성평등계정"이라 한다)의 용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 한 지원
- 2. 「양성평등기본법」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 지원
-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 · 연구 지원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 제18조의3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거창군수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거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노인복지기금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에 따른 자활기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M4조(기금의 재원) 제2조제1호에 따 M4조(기금의 재원) 제2조제1호에 따 른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조 제2호에 른 노인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1.~6. (현행과 같음)

혂 했

- 5.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 6. 그 밖에 양성평등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양성평등 관련 단체로 한다. 다만, 제 1항제1호의 지원은 제외한다.

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u>거창군</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u>군</u>에 로 하다.
- ③ (생 략) ▷제4조제2호에 약칭되어 있음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 분하여 관리·운용한다.

- 1. 노인복지계정
- 2. 양성평등계정
- 3. 자활계정
- ②~④ (생략)

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③ (생 략)

- 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 1. 노인 복지, 양성평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 을 가진 사람 2명
- 2.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3명 ⑤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삭 제>▷「지방자치법」제23조 중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군에 창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 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 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노인복지계정

<삭 제>

- 2. 자활계정
- ②~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 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 1. 노인 복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명
- 2.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대표자 3명 ⑤ (현행과 같음)

복재기재로 삭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36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의 출연금
 - 2.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3. 기금의 운용수익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4호, 2019. 12. 3, 일부개정]

-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5호, 2021. 7. 27, 일부개정]

-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1. 7. 27. 시행 2022.1.28.>]

부칙 <제18325호, 2021. 7.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1 - 15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창원지방법원 2021아10175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거 창 군 수

-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송달주소	납부금액
신*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배산로23번길 * 연**아파트 **4호	11,932,620원

- 3. 공고기간 : 2021. 11. 3. ~ 2021. 11. 17.(15일간)
-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 5. 기타 유의사항
 -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2021. 11. 17.(수)까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민사 집행법에 따른 금융자산 및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공시송달의 경우 그 서류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055-940-3072)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1 - 1546호

완전출국자 등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우리 군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 출국하거나 사망한 외국인 명의로 된 차량 중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대상 차 량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를 공고합니다.

2021. 11. 3.

거 창 군 수

- 1. 공 고 명 : 외국인 완전출국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정 공고
- 2. 공고기간 : 2021. 11. 3. ~ 11. 27.
- 3. 집행예정일 : 2021. 11. 29. 이후
- 3. 공고대상 : 4대(붙임참조)
- 4. 공고내용
 - 가. 완전 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 등으로 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고자 예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u>2021년 11월 27일까지</u>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가 되며, 운행정지 명령 이후 공고 대상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번호판 영치, 같은 법 제82조제2의2호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거창군 민원소통과(055-940-3295)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대상 차량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1	45수2876	HE**ATH MUYANSELAGE UPUL W
2	33수8796	L* MINGAI
3	62더7590	TE**E RUTH CHRISTINE
4	45라8742	UK**MOV BOBIR

거창군 공고 제2021-154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거 창 군 수

- 1. 자치법규명: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 2. 개정이유: 국가와 군 현안 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 반영 및 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침 변경에 따른 인력재배치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원 조정(안 제25조)
 - 1) 총수 증15명: 778명 → **793명**
 - 2) 집행기관 증12명 : 764명 → 776명
 - 2) 의회사무기구 증3명 : 14명 → <u>17명</u>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 1)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14명
 - 가) 현행: 699명(본청326, 의회11, 직속기관121, 사업소37, 읍43, 면161)
 - 나) 조정: 713명(본청334, 의회14, 직속기관112, 사업소37, **읍42**, 면174)
 - 2) 연구직(연구사) 정원 증1명
 - 가) 현행: 6명(본청3, 직속기관2, 사업소1)
 - 나) 조정 : **7명(본청3, 직속기관3**, 사업소1)

4. 소요예산 : 22년도 추경예산 예산 634,000천원 확보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u>2021년</u> <u>11월 22일까지</u>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다. 주소: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yl79@korea.kr

붙임「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_ 조	례	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bigcirc λ	J 명(다	<u>}</u>][볏) :			

○ 주 소: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제120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와 제134조"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120조"를 "법 제134조"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78명"을 "7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64명"을 "776명"으로 하고 제2호 중 "14명"을 "17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0조·제13조·제16조·제19조· 제22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M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 M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 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5조부터 제127조까지와 제134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 행정기 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 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 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③ (생략)

수도와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생 략)

제16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공 공 체육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군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둔 다.

② (생 략)

제19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제19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사건사 업소를 둔다.

② (생략)

제22조(읍·면) ① 법 제120조에 따라 제22조(읍·면) ① 법 제134조에 따라 읍 면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생 략)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 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상 제1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상 수도와 하수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수도사업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 공 체육시설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군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둔 다.

② (현행과 같음)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거창사건사 업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읍 면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설치한다.

② (생 략)

현 행	개 정 안
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 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는 <u>793명</u> 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집행기관 정원: <u>776명</u> 2. 의회사무기구 정원: <u>17명</u>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직속기관	-			
		총계	본청	의회	소계	농 업 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mark>의</mark>	면
초 0	계	793 778	358 350	17 14	149 157	75 72	74 85	41	43 44	185 172
정 <u>-</u>	무직	1	1							
	소계	756 742	352 344	17 14	119 128	45 43	74 85	40	43 44	185 172
	4급	4	3		1		1			
일 반 직	4~5급	1							1	
	5급	38	15	3	6	4	2	3		11
	6급 이하	713 699	334 326	14 11	112 121	41 39	71 82	37	42 43	174 161
	정직 당 이하)	1	1							
	구직 구사)	7 6	3		3 2	3 2		1		
	도직 도사)	28	1		27	27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 야 한다.
 -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수 있다.
 -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 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 1. 시 · 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 유구역청
 -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 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 2. 유사 ·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본청 ·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4조제 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

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1-1548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3일

거 창 군 수

- 1. 자치법규명: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국가와 군 현안 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 반영 및 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침 변경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 : 증 15명(안 별표 3)
 - 1) 일반직 6급 신설 및 조정
 - 가) 사업소 (감1명) : 행정·공업·시설
 - 나) 사업소 (증1명) : 행정·세무·공업·시설
 - 다) 면 (감2명): 행정·사회복지·농업
 - 라) 면 (증2명): 행정·전산·사회복지·농업
 - 마) 본청·읍 (감2명) : 사무운영·전기운영·위생·방호
 - 바) 본청·읍 (증2명) : 사무운영·토목운영·위생·방호

2) 일반직 7급 : 증6명

- 가) 본청 7급(증2명) : 행정 1, 행정·사회복지 1
- 나) 의회사무과 7급(증3명) : 행정 2, 행정·세무·농업 1
- 다) 보건소 7급(증1명) : 행정·보건 1
- 라) 보건소 7급(감4명): 간호 3, 보건·의료기술·간호 1
- 마) 읍 7급(증1명) : 간호 1
- 바) 읍 7급(감1명) : 행정·사회복지 1
- 사) 면 7급(증4명): 간호 2, 행정·사회복지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3) 일반직 8급 : 증6명

- 가) 본청 8급(증5명): 행정 1, 행정·세무 1, 행정·녹지 1, 행정·공업·환경 1, 행정·공업 1
- 나) 농업기술센터 8급(증1명) : 행정 · 농업 1
- 다) 보건소 8급(감8명): 보건·간호 2, 사회복지·간호 2, 행정·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 라) 읍 8급(감1명) : 행정 · 사회복지 1
- 마) 면 8급(증9명): 행정·사회복지 1, 보건·간호 2, 사회복지·간호 2, 행정·보건·간호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4) 일반직 9급 : 증2명

- 가) 본청 9급(증1명) : 행정 시설 1
- 나) 농업기술센터 9급(증1명) : 행정 · 농업 1
- 다) 면 9급(증1명) : 행정 · 사회복지 1
- 라) 면 9급(감1명) : 행정 · 사회복지 1

5) 연구직(증1명) : 농업연구 1

4. 소요예산 : 22년도 증원 인력 예산 643,000천원 확보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u>2021년</u> <u>11월 22일까지</u>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다. 주소: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yl79@korea.kr

붙 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	트레 시형	행규칙
○ 성명(단체역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8조 관련)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 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 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 1. 시 · 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 2. 시 · 군 · 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 · 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 · 면 · 동과 그 출장소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병,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 2. 유사 ·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본청 ·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이하(시ㆍ군ㆍ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

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 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 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 · 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25조(정원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78명이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 정원: 764명

2. 의회사무기구 정원: 14명

제27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1-1549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거 창 군 수

-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 2. 개정이유: 본청과 직속기관 업무조정 및 읍·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단위업무에 대한 전결 처리 규칙 반영(안 별표)
 - 1) 전결규칙 신규업무 추가 : 5개 단위업무
 - 가) 직속기관 3개 단위업무
 - 나) 읍면 2개 단위업무
-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5. 의견제출
 -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u>2021년</u> <u>11월 22일까지</u>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yl79@korea.kr

붙임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성명(단체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거창군 단위사무 전결사항

○ 직속기관 전결사항 신설

소관별	단위업무				전결권자						
		사	무	명	담당				부	- - - - - - - - - -	HI
		ΛI	T	0	담 당 자	주 사	과 장	ㅏ	부군수	수	고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33.감악산 항노화웰리스 체험장 조성 및 관리	1. 감악산 항노화웰리스 조성 계획수립			기안					0	
			2. 감악산 항노회웰리스 체험장 기반조성				0				
		3. 감악산 항노	화웰리스	. 체험장 관리	기안		0				

○ 읍.면 전결사항 신설

단위업무	사 무 명	거 창 읍					면				
		담당			부		담당		부		비고
	71 T 0	담 당 자	주 사	과 장	바에장	읍장	담 당 자	주 사	- 면 장	면장	고
24.주민자치회	1. 주민자치회 구성	기안				0	기안			0	
	가. 위원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					0	기안			0	
	나. 위원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	기안				0	기안			0	
	다. 위원 인적사항 공개, 위원관리 등	기안				0	기안			0	
	2. 주민자치회 운영 및 관리	기안				0	기안			0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 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창군 공고 제 2021 - 15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및 제77조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문, 부과고지서, 자동차 검사명령서,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건설기계검사지시 최고 통지, 압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 부재 등의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 정비사업소에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1항에 의거 직권말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공 고 명 : 자동차 · 건설기계 검사안내 및 위반자 우편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 2. 공고기간 : 2021. 11. 03. ~ 2021. 11. 22.
- 3. 공고대상 : 48건(붙임내역 참조)
- 4. 문 의 처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3)

2021년 11월 3일

거 창 군 수